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궐도운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인인 궤도사업자 임원 변경' 항목을 신고대상에서 삭제, 변경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함(안 제2조)
- 나.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준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안 제4조)
- 다.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경력 '3년'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비영업용 전용궤도 운영자는 전문기관의 실무교육 이수자(24시간 이상)에 한해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안 제18조)
- 라. 법 개정으로 정밀안전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신청절차, 검사유효기간, 당해 년도 정기검사 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 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법 개정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 바. 법 개정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 용어 수정 및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함
(안 별표1~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으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 및 적정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검사기간”을 “정기검사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간”으로, “정기검사를”을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기검사 유효기간 전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 다음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전용궤도운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자격 소지자”를 “자격 소지 후 3년 이상 법 제22조에 의한 소정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격 소지자”를 “자격 소지 후 3년 이상 법 제22조에 의한 소정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검사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2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1 II 제9호 위반행위란 제9호 중 “임시검사”를 “수시검사”로 하고, 같은 II 제10호 위반행위란 제10호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II 제14호 위반행위란 제14호 중 “궤도운송사고를”을 “궤도운송사고등을”로 한다.

별표 2 II 제3호 위반행위란 제3호 중 “임시검사”를 “수시검사”로 하고, 같은 II 제4호 위반행위란 제4호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제3호

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II 제8호 위반행위란 제8호 중 “궤도운송사고를”을 “궤도운송사고등을”로 한다.

별표 3 제4호 위반행위란 제4호 중 “임시검사”를 “수시검사”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위반행위란 제5호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위반행위란 제9호 중 “궤도운송사고를”을 “궤도운송사고등을”로 한다.

별표 4 표를 “II. 개별기준”으로 하고, I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가.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궤도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생 략)	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u>같으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임원의 변경</u>	<u><삭 제></u>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① (생 략)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u><후단 신설></u>	5. ----- ----- <u>.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u>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
 자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
 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기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
 간 만료일(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받
 거나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연
 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
 한다)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다.

<신 설>

부내용 및 적정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① -

 -- 정기검사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

② -----
 - 정기검사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간-----

 ---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
사를 -----.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정
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
해 년도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
으로 본다. 다만, 정기검사 유효

1.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
격 소지자

1. 소지자
격 소지 후 3년 이상 법 제22조
에 의한 소정의 안전관리업
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u>자격 소지자</u> 3.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u><신설></u> <u>제18조의2·제18조의3</u> (생략)	2. ----- ----- <u>자격 소지 후 3년 이상 법 제22조에 의한 소정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3. (현행과 같음) 4. <u>안전검사전문기관에서 실시 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실 무교육을 2년마다 24시간 이 상 이수한 사람</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2(궤도시설 종합정보관 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 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 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 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 공단에 위탁한다.</u> <u>제18조의3·제18조의4</u> (현행 제 18조의2 및 제18조의3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